

등록번호	취업지원과-18832
등록일자	2014.12.8.
결재일자	2014.12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자활지원팀장	취업지원과장	기획재정국장	
이수경	서창수	전결 12/08 이제영	
협 조	주무관	정지영	

#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



기획재정국  
취업지원과

# 201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

## 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2. 2.(월) ~ 6.30.(화) [5개월]
- 모집인원 : 101명
- 사업비 : 587,823천원
  - ※ 총 사업비 1,175,646천원(시비656,423천원(56%),구비519,223천원(44%))
- 추진사업 : 서비스지원사업, 환경정화사업, 기타사업

## ■ 참여자 접수

- 신청자격 :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중구민으로서
  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  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
  -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가족합산 재산(주택,토지,건축물)이 1.35억원 이하인 자
- 접수기간 : 2014. 12. 15.(월) ~ 12. 19.(금)
- 접수기관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## ■ 참여자 선발

- 선발기준 : 재산보유액, 가구소득, 공공일자리 사업참여, 세대주, 부양가족수, 취업취약계층, 자격 등
- 선발방법 :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

## ■ 근로조건

- 임금단가 : 6시간 근무 34,000원/ 4시간 근무 23,000원
- 주·월차 수당 및 일5,000원 부대비용 지급
- 4대보험(연금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및 공제
- 근로조건 : 사업장별 탄력근무, 주5일 근무 원칙

## ■ 추진일정

-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: 2014. 12. 15. ~ 12. 19.(5일간)
- 신청자 자격여부 및 명단확정 : 2014. 12. 22. ~ 2015. 1. 27.
- 실시계획 시달 및 대상자 통보 : 2015. 1. 28.(수)
- 사업 개시 : 2015. 2. 2.(월)

# 201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

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제 1 장

## 공공근로 사업 개요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2. 2.(월) ~ 6.30.(화) [5개월]
- 사업비 : 587,823천원
  - ※ 총 사업비 1,175,646천원(사비 656,423천원(56%), 구비 519,223천원(44%))
- 계층별 사업구분
  - 일반공공근로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신청사업
  - 청년공공근로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자 신청사업
- 근무기간별 사업구분
  - 기본 사업 : 일 6시간 근무(일34,000원)
  - 예외 사업 : 일 4시간 근무(일23,000원)
- 사업내용
  - 3개분야 : 서비스지원사업, 환경정화사업, 기타 사업
  - 14개 부서 15개 동주민센터 37개 사업
  - ※ 사업선정내역 [별첨 9]

### 1. 선정방향

-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추진
-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발굴
  -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,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발굴
  - 기술습득으로 취업능력 향상 가능한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시행
- 그동안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
- 기존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
  -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, 기존 공무원이 수행 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억제
  - 주정차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
- 전문인력 사업 운영
  - 대상사업 : 교통행정과 ‘자전거 무상수리사업’
  - 필 요 성 : 자전거 수리 가능한 전문인력 필요
  - 자 격 : 자전거 정비사 자격증 가진 자
  - 사업참여횟수 제한 규정 완화 적용

### 2.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

-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
  -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특별사업단, 작은도서관 운영지원, 보건소 서비스 업무지원 등 청년층에 적합한 사업 발굴

### 3. 사업선정 결과

- 사업 신청 접수결과 : 14개 부서 15개 동 주민센터 / 48개 사업 181명
- 사업 선정 결과 : 14개부서 15개 동 주민센터 / 37개 사업 101명 결정

## 제 3 장

## 신청자 접수

### 1. 신청자격

가.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구민으로서

-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
- 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)이 1.35억원 이하인 자
  - 가족의 범위 :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
  - 단,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

나.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(원칙)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
  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)이 1.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  -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
  - 1세대 2인 참여자 (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)
  -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(2회)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    - \*\*\*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(15개월)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10개월(2회)까지만 허용
- ※ ‘55세 이상’ 규정은 2016년부터 기업체 60세 정년연장에 맞추어 ‘60세 이상’으로 변경 예정
-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
    -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
    -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
    -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

-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,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-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
-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다.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

-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
- 6월 이상 무급휴직자
- 서울시계 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사도 거주자도 예외적 참여 가능
-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또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

< 참고 : 2015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>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5년	617,281	1,051,048	1,359,688	1,668,329	1,976,970	2,285,610

2. 신청서 접수 및 처리

가. 신청자 접수기간 : 2014. 12. 15.(월) ~ 12. 19.(금)[5일간]

※ 참고 하반기(예정) : 2015. 5. 18 ~ 5. 22

나. 신청 구비서류

- 공공근로사업 신청서【별첨 1】
- 정보제공 동의서【별첨 2】
- 구직등록필증(서울시알자리플러스센터, 중구 알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)

- 가점대상 증빙서류 : 취업보호지원대상자, 여성세대주(가장), 장애인 및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 가정 등
- 기타 사업시행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

#### 다. 신청서 접수 및 처리

- 신청자격 확인 : 동 주민센터 담당

#### ★ 동 주민센터 담당 확인사항 ★

-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서명 확인
- 의료보험이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피부양자인 경우, 신청서에 의료보험 납입자의 서명 날인 확인
- 1세대 2인이상 신청여부,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여부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여부
- 종합토지세액, 재산세액, 자동차 소유여부, 사업자등록여부 : 세목별과세증명
- 장애인 여부를 포함 각종 가점요소 적합 여부 확인

※ 확인 사항은 담당자의 확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일관적인 확인을 맡아여가능여부에 대한 담당자의견을 기재

### 3. 조회 및 확인

- 확인자 : 취업지원과 공공근로 담당

#### 가. 확인·조치 내용

-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기간
  - 실업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사업 참여 배제
  - 실업급여 수혜자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초과자 및 그 배우자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
  - ▷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기준일 : 단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, 단계 중 수시(대체) 선발의 경우 사업 투입일을 기준

-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
  -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 참여 당연 배제. 다만,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
  - 연금 수혜자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초과자 및 그 배우자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
    - ▷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공무원 연금의 수혜금액은 신청자의 이력사항,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선별적으로 조회
  
- 정기 소득이 있는 자
  - 사업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(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)
    - ▷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, 정보화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위탁사업 참여자, 퇴직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자 등은 예외
 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
    - ▷ 단, 정기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사업 참여 기회 부여
    - ▷ 신청자의 재산상황(재산세, 종합토지세, 자동차 소유여부)은 신청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여 기재

## 제 4 장

## 대상자 선발

### 1. 선발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

#### 가. 고려요소의 선택

- 필수 고려요소 : 재산상황, 가구소득, (여성)세대주, 부양가족수,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, 결혼이주여성, 북한이탈주민 여부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등
- 임의 고려요소 : 직업훈련 참여 실적, 실업기간, 자격경력능력 등

#### 나.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 기준 표준(안)



고려요소	판 단 기 준	가 중 치 (100)	비 고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	·4.5천만원 미만 : 10점 · 9천만원 미만 : 5점 · 1.35억원 미만 : 0점	10 (10, 5, 0)	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
가구소득	(지역, 직장보험포함) ·2만원 미만 : 15점 ·3만원 미만 : 10점 ·5만원 미만 : 5점 ·5만원 이상 : 0점	15 (15, 10, 5, 0)	건강보험료 조회결과
공공일자리 사업참여	사업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·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20점 참여 5개월 이하 : 10점 참여 6~9개월 : 0점	20 (20, 10, 0)	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
세대주	세대주 여, 부	10(10, 0)	
부양가족수 (세대주동거인제외)	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	15 (15, 10, 5, 0)	주민등록표 확인
취업 취약 계층	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 성세대주	10(10, 0)	중복 가점 불가
	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	5(5, 0)	
	장애인 및 가족	5(5, 0)	
자격요건	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	10(10, 5, 0)	
자치구 판단사항	특별히 고려할 사항 (경력 등)	10	가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

- 재산 : 주택, 건축물, 토지의 과표 표준액 확인
  - 가족 합산 재산 보유액 1.35억 이상자는 사업 참여를 적극 배제하고, 재산 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10점~0점 가중치 부여함
    - ▷ 재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
  - 최종 선발자 확정 후 이의 신청 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 또는 가점 부여
  - 금융재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(1,600cc이상 중대형 자가용) 등은 심사전.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
    - ▷ 고급주택거주자, 민원제기자,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 판정 시 즉시 배제 조치
- 가구 소득 :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

-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15점~0점 가중치 부여함

▷ 2015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최저생계비	617,281	1,051,048	1,359,688	1,668,329	1,976,970	2,285,610
보험료	18,734	31,899	41,266	50,633	60,001	69,368

-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
  - ▷ 의료급여 수급자(의료보호증 소지자)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“0원”으로 간주
  - ▷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“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및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배제자는 연금소득으로 확인
  - ▷ 건강보험료 납부액 : 소득인정액 × 0.03035
-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: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확인
  - 공공근로사업 및 유사 재정일자리사업에(지역공동체, 노인일자리)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참여횟수에 따라 20점~0점 가중치 부여
- (여성)세대주 : 주민등록등본 확인
  - 지원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중치 10점(여성 20점) 부여
    - ▷ 여성세대주는 남편이 근로무능력자(중증장애인,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)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경우만 인정
    - ▷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(여성)세대주 가점 부여하지 않음
    - ▷ (사례1)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아버지(85세)이고, 아들(45세)이 아버지, 처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들을 실질적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
    - ▷ (사례2) 주민등록등본상 여성세대주(세대 분리)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인 경우 여성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또한 남편이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는 참여자격을 배제
    - ▷ (사례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등록부상 부부이나 객관적으로 부부로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(실질적 이혼관계)되면 신청자격 부여 가능  
(동 주민센터장의 확인 등 입증자료 첨부)
- 부양가족 : 주민등록등본 확인

- 부양가족수에 따라 15점~0점 가중치 부여
  - ▷ 부양가족 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18세 초과 65세 미만 자는 제외  
(단,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, 근로무능력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)
- 취업 취약 계층 :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·지원 대상자, 여성 세대주
- 해당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10점~0점 가중치 부여
-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
  - ▷ 취업보호·취업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, 5.18 민주 유공자 ,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자 특수임무수행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
- 자격 또는 경력·능력 : 해당 증명서 확인
  -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가중치 10점 부여함

## 2.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 선발기준

-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“재산상황, 정기소득 유무, 실업 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 여부,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, 고려요소별 가감점 항목 ”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
- 특히, 재산 1.35억 이상 참여자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가구소득 합산 시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함
- 다만,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 참여자와 같이 「고려요소」를 반영 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

## 3. 참여자 선발

- ①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
- ②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
- ③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한 공공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
  - ▷ 「표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서식」 참조 :【별첨 4】

## 4. 참여기간 제한

-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(2회)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  - \*\*\*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(15개월)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10개월(2회)까지만 허용
  - ※ ‘55세 이상’ 규정은 2016년부터 기업체 60세 정년연장에 맞추어 ‘60세 이상’으로 변경 예정
  - ▷ (사례1) 2014년 상반기, 하반기 연속 참여자는 2015년 상반기, 하반기 참여 불가
  - ▷ (사례2) 2013년 3단계, 4단계 및 2014년 상반기 참여자가 2015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3년 3단계부터 계산하여, 총 11개월 참여하였으므로 참여 불가
  - ▷ (사례3) 2013년 3단계, 2014년 상반기 참여자가 2015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3개월(8개월+5개월)로 10개월을 넘지만, 참여배제시 참여자에게 2개월(10개월-8개월)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외적 허용

〈 55세 이상 등의 사례 〉

- 원 칙 : 연속참여 10개월 제한만 있음
- 사 례 :
  - ① 2014년 상반기, 하반기 연속 참여자는 2015년 상반기에 참여 불가하나, 하반기부터 참여 가능
  - ② 2014년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고, 2014년 하반기에 참여한 자는 연속참여 5개월이므로 참여 가능
  - ③ 2013년 3단계, 4단계 및 2014년 상반기 참여자는 2014년 하반기 5개월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상반기, 하반기에 참여 가능

- 참여제한 공통사항
  -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
  -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(5개월)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
  - 단,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(5개월)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, 시행기관별 탄력적인 적용

## 5. 참여자 선발 시 참고사항

-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,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

-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

## 6.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

### 가. 선발자의 사업근무지 배치

-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,
  -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
  - 전직(前職), 특기, 학력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
-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, 다음단계 참여 배제
  -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 참여 후 포기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단계 참여 허용

## 제 5 장

## 임금 및 근로조건

### 1. 근로자의 법적 지위

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(제2조)상의 「근로자」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『근로자』로 봄

### 2. 임 금

#### 가. 임금단가

- 참여자 1인당, 1일 인건비
  - 시급 5,580원 × 6시간 = 33,480원 ⇒ 34,000원 지급
  - ▷ 4시간 근무자 23,000원
- 실 근무일 1일에 대해 부대비용 5,000원 지급

#### 나. 임금의 지급방식

-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, 임금명세서 교부
  - 단, 임금지급일(5일)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
  -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

(근로기준법 제36조)

-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, 신용불량자는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입금 가능
  -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(또는 정부)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 압류 금지되는 “전용통장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
  - 전용통장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 현금 지급
    - ▷ 신용불량자인 경우만 적용 가능 (다른 사유로 적용 불가)
    - ▷ 현금 지급 시 「표준 현금 지급대장 서식」작성·관리 : 【별첨 6】참조

### 3. 근로조건

#### 가. 근무시간

- 1일 6시간이내, 주 5일 근무 원칙
  - 65세 이상 노령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1일 4시간 또는 3시간 근무 가능
  - 육아, 가사사정(경력단절 여성 등)으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 근무제 실시
-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
  - 정규 시간 외 초과근무 및 22: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
  -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(월~금요일중 1일 또는 2일)을 대체 휴무 실시(단,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)
  - 동절기 근로시간도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실외작업 시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때에는 사업부서의 판단 하에 실내작업 대체

#### 나. 주 유급휴일, 연차 유급휴가

-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
  - 주일 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(임시공휴일 포함)이 있는 일의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
  - 다만,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수당은 지급
  -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

근무하기로 정한 날(5일)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

▷ (사례)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~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이 가능하나, 금요일이 아닌 경우는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수당 지급 불가

○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

▷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,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+유급 휴가(1일)분의 임금을 지급

○ 지각,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주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

○ 1주(週)와 1월(月)의 기간 계산 방법

- 1주(週) :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

- 1월(月) :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

▷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(月)로 계산

(2. 15 ~ 3. 14)

다.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

○ 예비군·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, 교육기간(시간)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

▷ 다만,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(시간) 이외의 기간(시간)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

○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

▷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·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

라.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

○ 경조사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준한 휴가 부여(단,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)

- 일일임금은 미지급하되 주·연차 유급 휴가 인정

《경조사의 범위》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5일
	자 녀	1일
출 산	배 우 자	5일
입 양	본 인	20일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모부	2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일

○ 본인사정으로 지각,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및 전문관리료원 수당 지급

- 계산식 : 임금 등 단가 × 실근무시간/6시간

- 다만, 교통비·식비 등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지급

○ 작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

-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일일임금의 반액을,  
3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

○ 연장근로 등의 금지

- 연장근무,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허

- 다만,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근무 가능

○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

-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 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할 때는 10일간 (공휴일 및 토·일요일 포함) 사업 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

- 사업의 재참여 요청 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내 참여 가능

마. 근로조건의 명시

○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

-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, 사업 종업의 시각, 휴게시간,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,



- 특히, 임금에 관한 사항(일당,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)은 서면으로 명시하고,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
-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민원 등 분쟁 소지예방
- 사업시행 기관별로 상담 및 지역여건에 맞게 「근로계약서」를 마련하여 운영
  - ▷ 「표준 근로계약서 서식」 참조 :【별첨 6】

## 제6장

### 홍보 방안

1. 언론매체 활용 : 매 단계 개시 전 보도자료 제공
2.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

## 제7장

### 추진 일정

1. 모집안내 및 공고 : 2014.12.8.(월)~12.19.(금)
2. 신청자 서류접수 : 2014.12.15.(월)~12.19.(금)
3. 재산 등 정보조회 및 선발 : 2014.12.22.~2015.1.27.
4. 선발자 통보 : 2015.1.28.(수)
5. 사업개시 : 2015. 2. 2.(월)

## 제8장

### 행정사항

1. 동 주민센터
  - 공고 및 홍보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
  - 공공근로 참여자 접수 : 2014.12.15(월)~12.19(금)
 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청송부 : 2014.12.23(화)

【별첨 1】

중구청	<b>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</b>
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접수번호						(신청일자 : 2014. . .)	
성명			남, 여	주민등록번호	-		
주소				연락전화번호			
주요이력사항	전공						
	자격증	1.		2.			
	혼인	①기혼 ②미혼	세대주	①해당 ②해당없음	세대원수 (세대주, 동거인제외)	인	
	취업관련	①실직 ②미취업	실업기간	년 월	전직업		
	교정시력	좌 ( ), 우 ( )		색맹	유, 무		
기타사항	주거형태	자가( ), 전세( ), 월세( ), 기타( )					
	세대원소득	월 만원	재산상황	부동산	백만원, 동산	백만원	
신청사업	(사업번호 기재)		경력사항				
취업관심분야	①사무직 ②마케팅·유통 ③영업직 ④IT ⑤생산직 ⑥서비스 ⑦전문·특수 ⑧미디어 ⑨기타( )						
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	2013년 : 1단계( ), 2단계( ), 3단계( ), 4단계( ) 2014년 : 상반기( ), 하반기( )						

-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, 배우자,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, 재산, 연금,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“개인정보보호법”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·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: (날인/서명)

**【별첨 2】**

**[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]**

**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**

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, 근로계약 체결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(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)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직업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학력, 세대원(수), 주거상태, 경력,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, 건강보험증 번호, 공무원 가족 여부,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, 재산상황 등
-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수집·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

동의함     동의안함

**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**

-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, 연금관련공단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국방부 군인연금, 국가보훈처 보훈연금)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,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서울시, 행정자치부,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국민건강보험공단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목적 :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,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 참여 선정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국민건강보험(가입여부, 보험료 부과액, 수급자 인원,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) 현황, 연금(가입여부, 지급액) 현황, 소유재산(주택, 건축물, 토지) 과세표준액,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,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
-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)

동의함     동의안함

**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·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 및 「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」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의함     동의안함

2014. . .

**○ 인적사항**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서명
신청인			
배우자			
가족			

**○ 건강보험증**

관계	성명	건강보험증번호	서명
신청인			
보험가입자(부양자)			
배우자(별도가입시)			

【별첨 3】

신청자 확인

※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,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.
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	해당, 해당없음	
②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	해당, 해당없음	
③ 장애인(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)	해당, 해당없음	
④ 여성세대주 (가 장)	혼인유무	유, 무
	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	유, 무
	남편의 근로능력	유, 무(증명서 첨부)
⑤ 북한이탈 주민	해당, 해당없음	
⑥ 6개월이상 실직자	해당, 해당없음	
⑦ 청년층 대상 사업 참여자(만 39세 이하)	해당, 해당없음	
⑧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	해당, 해당없음	
⑨ 노숙인	해당, 해당없음	
⑩ 결혼이주여성	해당, 해당없음	
⑪ 면허세 부과(본인 또는 배우자) 여부	해당, 해당없음	
⑫ 2013년 7월이후 공공근로 참여 여부	10개월 미만( ), 10개월 이상( )	
	해당없음	
⑬ 기 재 사 항	재산세 과세액(2014년 정기분 합산) :            원 장애등급 :            급 장애인 본인 여부 : 본인, 가족 * 중증장애인 : 해당, 해당없음	
⑭ 주민등록 등본 확인	신청서에 이상 (없음, 있음)	
⑮ 기타 담당자 의            견	담당자 확인 성명            (인)	

2014. .

동장(관인)

※ 주의 :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

【별첨 4】

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(표준안)

신청자 성명 :

고려요소	판 단 기 준	가 중 치 (100)	비 고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	·4.5천만원 미만 : 10점 · 9천만원 미만 : 5점 · 1.35억원 미만 : 0점	10 (10, 5, 0)	재산조회 결과
가구소득	(지역, 직장보험포함) ·2만원 미만 : 15점 ·3만원 미만 : 10점 ·5만원 미만 : 5점 ·5만원 이상 : 0점	15 (15, 10, 5, 0)	건강보험료 조회결과
공공일자리 사업참여	사업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·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20점 ·참여 5개월 이하 : 10점 ·참여 6~9개월 : 0점	20 (20, 10, 0)	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
세대주	세대주 여, 부	10 (10, 0)	
부양가족수 (세대주동거인제외)	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	15 (15, 10, 5, 0)	주민등록표 확인
취업 취약 계층	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	10(10, 0)	중복 가점 불가
	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· 지원 대상자	5(5, 0)	
	장애인 및 가족	5(5, 0)	
자격요건	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	10(10, 5, 0)	
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	특별히 고려할 사항 (실업기간, 직업훈련 등)	10	가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

\* 판단기준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

【별첨 5】

## 현 금 지 급 대 장

00구 0000과

연번	성 명	주민번호	근로 일수 (주·월차 포함)	지급액	지급일	근로자 서명	담당자 확인	관리자 확인
1	서공공	***** 1352147	23일	912,000원	12-01-21			

※ 작성시 주의사항

-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
-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근로자의 동의서 첨부(양식 제한 없음)

【별첨 6】

# 근로계약서(표준안)

◀ 근로계약서 : 예시 ▶

1. 중구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사업(업무)내용 : “사업명”
- 작업장소 : “사업장소 명기”
- 근무기간 : “단계별 기간 명기”
- 임금 등 급여조건
  - “1일의 임금 명기” (자치단체별 지급방식 : 주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 등)
  -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
 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(계좌번호 : )
  - 1주(근로계약일부터)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
  -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
  - 1일 식비 5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- 근무시간 : 월~금요일, 1일 6시간(09:00~16:00)(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)
-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

3. 기타 사항

-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계약 해지
-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·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합니다.
- \*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, 2차 경고, 3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(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)
-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『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』에 따라 시행되며,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5. . .

중 구 청 장

※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.

홍길동 \*\*\*\*\* (주민등록번호) (서명)

【별첨 7】

## 근무기록부(표준안)

근무일	1일	2일	3일	4일	5일	6일	7일	8일	9일	10일
근무자 서명(인)						휴무일	휴무일			
담당확인						/	/			
비 고			취업박람회			/	/		직업훈련	
근무일	11일	12일	13일	14일	15일	16일	17일	18일	19일	20일
근무자 서명(인)			휴무일	휴무일	국경일					휴무일
담당확인			/	/	/					/
비 고			/	/	/		조퇴			/
근무일	21일	22일	23일	24일	25일	26일	27일	28일	29일	30일
근무자 서명(인)	휴무일						휴무일	휴무일		
담당확인	/						/	/		
비 고	/		무단결근				/	/		
근무일	31일									
근무자 서명(인)										
담당확인										
비 고										
특이사항 : 직업훈련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) 1.14~1.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- CAD 및 포토샵 활용	근무일수		근로단가		총 지급액					
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: 주 소 : 주민등록번호 : 계좌번호 :	00		00,000원		○ 기본임금 000,000원 - 21일, 00,000원 ○ 식비 00,000원 - 21일, 0,000원 ○ 주·월차수당 000,000원 - 주4,월1 000,000 000,000원 원 합 계 0,000,000원 ○ 고용보험료 공제 0,000원 ○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,000원 ○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○ 공제 후 지급액 000,000원					
위 사실을 확인함 2015. . .										
[작성자] 부서명:				성명 :			(인)			
[확인자] 부서명:				성명 :			(인)			



【별첨 8】

## 보안서약서

본인은 중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,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.
2.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.
3. 출·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.
4.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5.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(담당)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.

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,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15. . .

서약자 : (서명)

중구청장 귀하

【별첨 9】 사업선정내역

부서명	사업명	모집인원	비고
총 계		101	
서비스지원사업(청년)		6	
취업지원과	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	2	
취업지원과	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운영지원	1	
건강관리과	예방접종사업 지원	1	
의약과	검진 및 보건사업 지원	2	
서비스지원사업(일반)		29	
문화관광과	작은도서관 운영지원	10	
세무2과	과태료체납 변호판 영치사업	1	
복지지원과	보훈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	2	
	지역사회 지킴이	1	
	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보조	1	
사회복지과	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	7	
	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	6	
건강관리과	이동목욕서비스 지원	1	
환경정화사업(일반)		60	
총무과	구청사광장 및 시설유지관리	2	
민원여권과	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안내	1	
청소행정과	자원 재활용 처리사업	1	
	일회용 플라스틱컵 정거장 및 재활용분리대 관리	1	
	공공화장실 관리	2	
공원녹지과	마을마당 및 녹지대 유지관리	10	
	공원시설정비사업	10	
도시디자인과	불법광고물정비사업	2	
교통행정과	명동 차 없는 거리 운영	1	
15개 동 주민센터	동 편익사업	30	동별 2명
기타사업		6	
교통행정과	자전거무상수리사업	6	

